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철회공고

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(2018년 11월 15일 예정)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2018년 10월 10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.

그러나 본 회사는 위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해야 할 필요가 있어 2018년 10월 29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철회하였으므로, 이에 기존에 공고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을 철회함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9일

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 (성수동1가)

대표이사 황성택 · 이운표 · 김영호